



# 서울중앙지방법원

2016. 12. 11.

사건번호 2016년 형제

수신자 서울중앙지방법원

발신자

검사

제 목 공소장

아래와 같이 공소를 제기합니다.

## I. 피고인 관련사항

피고인 조

직업 前 청와대 경계수석비서관

주거

등록기준지

죄 명 강요미수

적용법조 구 형법(법률 제11731호) 제324조의5, 제324조, 제30조

구속여부 불구속

번호인



## II. 공소사실

[피고인, 대통령직속 기관]

피고인은 2013. 3.경부터 2014. 6.경까지 정부조직법과 대통령령인 대통령비서실직

제에 따라 대통령의 직무를 보좌하는 차관급 정무직 공무원인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비서관으로 근무하면서, 산하에 경제금융비서관·산업통상자원비서관·중소기업비서관·국토교통비서관·농축산식품비서관·해양수산비서관을 두고 재정·경제·금융·산업통상·중소기업·건설교통 및 농림해양수산 정책 등을 포함한 국가정책에 관한 사무를 관장함으로써 각종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체들의 활동에 있어 직무상 또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사람이다.

대한민국 제18대 대통령 박 (이하 '대통령'이라 한다)는 2013. 2. 부터 대한민국 헌법에 따른 국가원수 및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국민경제의 성장과 안정을 위하여 도시, 주택, 군사시설, 도로, 항만 시설, 사회 간접시설 등 대형건설 사업 및 국토개발에 관한 정책, 기업의 설립, 산업구조조정, 기업집중 규제, 대외무역 등 기업활동에 관한 정책, 부동산 투기억제, 물가 및 임금 조정, 고용 및 사회복지, 소비자 보호 등 국민생활에 관한 정책, 통화, 금융, 조세에 관한 정책 등 각종 재정, 경제 정책의 수립 및 시행을 최종 결정함과 아울러 이와 관련하여 소관 행정 각부의 장들에게 위임된 사업자 선정, 신규사업의 인허가, 금융지원, 세무조사 등 구체적 사항에 대하여 직접적·간접적 권한을 행사함으로써 각종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체들의 활동에 있어 직무상 또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다.

#### 【범죄사실】

피해자 이 은 C 그룹 회장 이 의 누나로서, 1995.경 제 에 입사하여 1998.경 제 멀티미디어 사업부 이사, 2002.경 C 엔터테인먼트 사업부 상무,

2005.경 C 아메리카·C 미디어·C 엔터테인먼트 각 부회장, 2011.경부터 C 그룹 부회장으로 각각 근무하였고, 특히, 2011. 3.경부터 C (주식회사)(이하 'C 이라 한다)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등 C 그룹 내 엔터테인먼트 사업 분야를 총괄하여 온 사람이고, 피해자 손 은 피해자 이 의 외삼촌으로서 삼 대표이사 부회장, C 그룹 대표이사 부회장을 역임하던 중, 2013. 7. 경 C 그룹 총수 이 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조세)죄 등으로 구속되자 그때부터 대표이사 회장으로서는 그룹 업무를 총괄하여 왔으며, 2005. 11.경부터 2013. 7.경 까지 대한상공회의소 회장(4회 연임)을 역임한 사람이다.

피해자 이 은 위와 같이 C 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등 C 그룹 내 엔터테인먼트 사업 분야를 총괄하여 왔는데, 제18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2012. 6.경 C 이 운영하는 케이블 방송 채널 t 의 인기 프로그램인 'S 의 시사·정치 풍자코너 '여의도 텔레토비'를 통해 당시 새누리당 대통령선거 후보자인 박 을 희화화하는 취지의 방송을 송출하였고, 2012. 10.경 C 이 영화 '광해, 왕이 된 남자'(당시 민주당 대통령선거 후보자인 손 은 위 영화를 감상한 후 '故 노 前 대통령을 생각나게 하는 영화라서 눈물을 흘렸다'라고 평하기도 함)를 기획·투자·배급하였으며, 2013. 7.경에는 C 의 계열사인 C 가 노 前 대통령의 일화를 바탕으로 한 '변호인'이라는 영화의 제작에 투자를 검토하기도 하는 등으로 문화콘텐츠 사업을 활발하게 영위하여 왔다.

한편, 피고인은 2013. 7. 경 서울 종로구 청와대로 에 있는 청와대 본관에서 이루어진 경제부총리의 청와대 정례 보고 직후 대통령과 단 들이 있는 자리에서 대통령으로부터 'C 이 걱정된다, 손 이 회장이 대한상의 회장직에서 물러나고, 이 부회장은 C 의 경영에서 물러났으면 좋겠다'라는 지시를 받았다.

1) 2011. 3.경 C 계열사인 C

등 6개 콘텐츠 관련 계열사가 합병되어 설립

피고인은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2013. 7. 경 C 회장이 이 1,600억 원  
대의 탈세·횡령·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되어 C 이 비상경영 체제에 놓이게 된  
것을 기회로 경제수석으로서의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C 내 엔터테인먼트  
사업 분야를 총괄하던 피해자 이 을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.

그에 따라 피고인은 2013. 7. 경 서울 중구 소공로 에 있는 서 호텔  
5층 비즈니스센터 미팅룸에서, 위 이 의 구속 이후 C 회장으로서의 역할을  
담당하던 피해자 손 에게 “V )의 뜻입니다. 이 부회장으로 하여금 경영에  
서 손을 떼게 하십시오”라고 요구하고, 계속하여 2013. 7. 하순경 피해자 손 과  
전화 통화를 하면서 피해자 손 에게 “사퇴하지 않으면 더 큰일이 벌어집니다”,  
“선생님 조금 늦었을지도 모릅니다, 그래서 빨리 좀 하시는게 좋겠다”, “수사까지  
안 갔으면 좋겠다는 그런”, “그래서 저는 사실 기다리고 있었거든요”, “C 가 건강한  
기업으로 계속 남았으면 좋겠다는 뜻입니다, 어떤 정치색이 없고 그렇게 갔으면 좋  
겠다는 의견입니다”, “V 말씀올 전하는 겁니~~다~~ 뜻이 확실합니다, 직접 들었  
습니다”, “회장님 너무 늦으면 진짜 저희가 난~~다~~입니다, 지금도 이미 늦었을지도  
모릅니다, 아무튼 뭐 거기까지는 제가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”라고 말하고, 피해자  
손 으로부터 청와대 내부의 합의가 있었는지 질문을 받자 화를 내며 “컨센서스  
가 무슨 컨센서스입니까, 그냥 쉬라는데요, 그 이상 뭐가, 뭐가, 뭐가 더 필요하십니  
까? 제가 확실하게 전달을 해드렸습니다”라고 격양된 어조로 말하며, 피해자들이  
위와 같은 사퇴 요구에 불응할 경우 이 의 구속에 이어 재차 C 이나 피해  
자 이 에 대하여 검찰 추가수사 또는 세무·공정거래 조사가 이루어지거나 인허  
가의 어려움 등 기업 활동 전반에 걸쳐 직·간접적인 불이익을 당할 위험이 있다는  
의구심을 일으키게 하는 방법으로 해약을 고지하였다.

2) 청와대에서 대통령을 칭하는 말

피고인은 대통령과 공모하여,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상대로 피해자 이 으로부터  
하여금 C 부회장 자리에서 사퇴하고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도록 협박하여 권력  
행사를 방해하고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하였으나, 피해자들이 이에 응하지 아니함  
으로써 피수에 그쳤다

### III. 첨부

1. 구속영장(피의자심문구인용) 1부
2. 구속영장청구서(판사기각) 1부
3. 변호인선임서 3부
4. 피의자석방보고서 1부

국회  
제출  
용